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39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박희승·민병덕·김정호

윤준병 • 서영교 • 정준호

박상혁 · 안호영 · 강유정

전진숙 · 김한규 · 소병훈

황명선 · 김문수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세부담을 경 감하기 위해 장애인 소득공제를 두어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경우 행정규칙인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해석하고 있으나, 그개념이 포괄적이며 법률이 아닌 행정청 내부의 규칙에 의해 과세가달라지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현행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등급 또는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금액이 적용되는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소 득공제는 납세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인적공제이자 생활상 추가 경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추가공제라는 점에 비추어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제금액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부적정한 자의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장애 등급·정도에 따라 소득공제의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을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0만원"을 "200만원(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 4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따른 장애아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 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	제51조(추가공제) ①
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	
(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	
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	
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	
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	
를 적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2.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u>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u>해당하는 사람</u>
경우 1명당 연 <u>200만원</u>	
	<u>200</u> 만원(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 400만원)
<u><신 설></u>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
	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
	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사람</u>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
<u>는 사람</u>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시 치료가 필요
한 중증환자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